

예산총칙

제1조 :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837,394,289	25,121,829
1. 일반회계	827,672,821	24,830,185
2. 특별회계	9,721,468	291,644
의료급여기금	1,298,430	38,953
주차장	7,831,541	234,946
주거환경개선사업	65,191	1,956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437,381	13,121
지하수관리	88,925	2,668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: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143,746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세, 일반조정교부금,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